

대전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가단143339 판결 [사해행위취소.구상금]

전 문

원 고 대전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5. 25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58,695,941원 및 그 중 58,580,395원에 대하여 2021. 12. 2.부터 2021. 12. 2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. 8. 18.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한다.
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. 8. 19. 접수 제797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88조)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와 A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다.

2) A의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

○ A은 2021. 6. 24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21. 6. 9. 매매(거래가액 22,932,000원)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, 2021. 3. 12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21. 2. 26.

매매(거래가액 25,382,000원)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.

○ A은 2021. 8. 18. 피고 B(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50,000,000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5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, 2021. 8. 19.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위 계약을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하고, 위 등기를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.

3) A의 폐업 및 재산상태

○ A은 2021. 6. 29. C은행에 대한 원리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, 2021. 9. 14. ‘D’를

폐업하였다.

○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(가액 합계 48,313,998원)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, E은행,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(E은행 20,000,000원, C은행 65,205,779원), 피고 B에 대한 50,000,000원(2017. 10. 13. 10,000,000원, 2017. 11. 9. 40,000,000원)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상태이었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나 제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,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신용보증약정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, A이 운영하던 'D'의 지속적인 영업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1. 6. 29. 원리금연체로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원고가 2021. 12. 2.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해당한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인정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위 담보 제공행위로 인해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채무자인 A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,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A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

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(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), A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, A의 오빠와 피고가 선후배 관계이고 서로의 형제남매간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)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다. 결 론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강길연

별지